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

발 의 자 : 신장식 · 최혁진 · 강경숙
서왕진 · 차규근 · 김선민
한창민 · 박은정 · 김준형
이해민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내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공백이 발생하여 회계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제7항 본문 중 “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
2.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제1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9조제7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조합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9조(감독) ① ~ ⑥ (생 락)	제169조(감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조합 중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은 제14 6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계연도에는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과 「수산 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u>	⑦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매년----- ----- ----- --. <단서 삭제></u>
<u><신 설></u>	<u>1.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u>

<u><신 설></u> <u><신 설></u> ⑧ (생 략) 제180조(과태료) <u><신 설></u> ① ~ ③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u>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u> 2. <u>최근 5년 이내에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u> 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 ⑧ (현행과 같음) 제180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69조제7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조합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u>제4항</u>----- ----- ----- ----- -----.
---	--